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07
------	------

2021. 11. 24.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1. 11. 24.)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정책실장 황보연)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기반의 경영환경 조성 및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에 의거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에 2009년 최초 위탁 후 지속 위탁하여 해당사업의 연속성을 확보 중임.

다. 2021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서울산업진흥원과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 동의 및 보고)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 위탁기간 : ' 22.1.1. ~ ' 24.12.31.(3년)
- 위탁방식 : 사무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재계약)
- 소요예산(안) : 2,436백만원(' 21년 예산안 기준)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발명진흥법 제23조
 -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4조 및 제2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추진 필요성
 - 서울산업진흥원은 「발명진흥법」 의거 등록된 지식재산센터의 운영 기관이며, 시정 이해도가 높아 사업수행에 적합

-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은 상당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장기간 해당 사업을 수행한 서울산업진흥원의 경험과 역량을 적극 활용 필요

다. 추진경위

- '09. 1월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특허청)
- '09. ~ '12. : 서울산업진흥원과 1년 단위로 위탁협약 체결
- '13. ~ '15. : 서울산업진흥원과 위탁협약 체결(재계약 3년)
- '16. ~ '18. : 서울산업진흥원과 위탁협약 체결(재계약 3년)
- '19. ~ '21. : 서울산업진흥원과 위탁협약 체결(재계약 3년)

라. 주요 위탁사무

-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지원
- IP스타기업 육성지원
- 지식재산 인프라구축
- 서울지식재산센터 운영 및 관리
- 기타 서울시민과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마.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무가 최초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2012.10.) 6년이 경과¹⁾하게 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계약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현황

- 21세기에 들어서서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으로 작용함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음²⁾.
-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는 R&D 인력 및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과 인식의 부족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권리화가 대기업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임.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단서,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국가에서 혁신이 생겨나고 부(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자가 되는 4가지 조건(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환경에 적응, 국가 간 심화되는 기술과 전문인력의 불평등을 극복, 경제활동 영역과 공공 인프라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 중 하나로 ‘지식재산 제도’를 꼽음(세계경제포럼 2016. 1.).

- 이에 서울시는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브랜드가치 제고 등 지식재산 토털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9년 ‘서울지식재산센터(이하 “지식센터”)를 개소하고, 2012년에는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21년에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센터 운영 사업비로 34억 8천 2백만원(시비 24억 3천 7백만원, 국비 10억 4천 5백만원)이 편성돼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등 13개 세부사업을 수행 중임.

<서울지식재산센터 세부사업 현황>

지원분야	단위사업	2021년 예산(천원)	
		시비	국비(특허청)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302,954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143,385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112,000	-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아이디어 서울 발명공모전	100,000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인식제고 교육(동영상 제작·배포)	90,000	-
	서울시민 지식재산 인식조사	22,000	-
	지식재산 포럼	100,000	-
IP스타기업 육성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358,525	358,525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58,000	58,000
	IP 노래 프로그램	295,950	295,950
	IP 디딤돌 프로그램	99,750	99,750
	지식재산 재능나눔·IP경영인클럽	8,000	8,000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IP상담 컨설팅·홍보(비예산)	-	-
① 사업비 소계		1,690,564	820,225
② 사업 관리비		746,172	224,775
총 계 (①+②)		2,436,736	1,045,000

- 현재 지식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센터 운영기관으로 등록돼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직은 변리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1명과 컨설턴트 8명(변리사 4, 기술거래사 3, 창업지도사 1), 사무인력 2명으로 구성됨.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 서울시는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021.12.31.) 됨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서울산업진흥원과 3년간 재계약 할 계획임.
- 주요 위탁사무는 ▶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지원, ▶ IP스타기업 육성지원, ▶ 지식재산 인프라구축, ▶ 지식센터 운영 및 관리 등임.
- 이상의 지식재산 관련 사무들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전문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 한편, 지식센터 설립 이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2020년까지 5,478건의 지식재산권 창출, 1,808건의 지식재산 보호, 5,971건의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지원 등의 실적을 달성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촉진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민간위탁 주요 성과>

(단위 : 건)

세부 사업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합 계	906	1,290	1,025	1,126	920	1,654	1,663	2,116	2,141	2,397	1,573	1,523	18,334
지식재산권 창출	403	362	404	455	320	836	633	793	786	169	167	150	5,478
지식재산권 보호	-	30	21	65	46	203	338	677	112	96	103	117	1,808
지식재산권 활용	-	-	-	-	-	15	23	1	20	20	27	1	107
발명 경진대회	-	-	-	-	1	1	1	1	0 (페이지)	0 (페이지)	0 (페이지)	0 (페이지)	4
IP스타기업 육성	455	892	582	601	549	558	612	568	271	287	272	324	5,971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48	6	18	5	4	41	56	76	310	344	114	73	1,095
IP상당 컨설팅	-	-	-	-	-	-	-	-	642	1,481	890	858	3,871

- 따라서 장기간 지식재산 사업을 수행한 서울산업진흥원의 경험과 전문성,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자 재계약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상공회의소,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대학원 등 지식재산 관련 전문기관과 협회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경쟁관계 속에서 우수 수탁업체를 선정할 필요도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2907
----------	------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기반의 경영환경 조성 및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나.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에 의거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에 '09년도 최초 위탁 후 지속 위탁하여 해당사업의 연속성을 확보 중임
- 다. 2021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서울산업진흥원과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 위탁기간 : '22.1.1. ~ '24.12.31.(3년)
- 위탁방식 : 사무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재계약)
- 소요예산(안) : 2,436백만원('21년 예산안 기준)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발명진흥법 제23조
-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4조 및 제2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추진 필요성

- 서울산업진흥원은 「발명진흥법」 의거 등록된 지식재산센터의 운영기관이며, 시정 이해도가 높아 사업수행에 적합
-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은 상당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장기간 해당 사업을 수행한 서울산업진흥원의 경험과 역량을 적극 활용 필요

다. 추진경위

- '09. 1월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특허청)
- '09. ~ '12. : 서울산업진흥원과 1년 단위로 위탁협약 체결
- '13. ~ '15. : 서울산업진흥원과 위탁협약 체결(재계약 3년)
- '16. ~ '18. : 서울산업진흥원과 위탁협약 체결(재계약 3년)
- '19. ~ '21. : 서울산업진흥원과 위탁협약 체결(재계약 3년)

라. 주요 위탁사무

-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지원
- IP스타기업 육성지원
- 지식재산 인프라구축
- 서울지식재산센터 운영 및 관리
- 기타 서울시민과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 제23조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4조

제4조(시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25조

제2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2년 예산편성 시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정책과 산학협력팀 김선영 (☎2133-5229)